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[시행 2025. 3. 27.] [조례 제9570호, 2025. 3. 27., 타법개정]

서울특별시(재난안전정책과), 02-2133-8047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,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,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문화활동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, 5, 14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7.7.13, 2019.3.28, 2019.5.16, 2020.5.19, 2023.5.22, 2023.10.4>

- 1. "재난"이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(「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2. "준비단계"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·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,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.
- 가. 상시준비단계: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·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 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. 사전준비단계: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·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
- 3. "비상단계"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,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·대응 및 복구(이하 "수습"이라 한다)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 부(이하 "대책본부"라 한다)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,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 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·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 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.
- 4. "자연재난대책기간"이란 자연재난 중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 한다. 다만,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・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 다.
- 가. 여름철의 경우 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- 나. 겨울철의 경우 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
- 5. "예방"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,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- 6. "대비"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·훈련, 매뉴얼 정비,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7. "대응"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, 응급조치, 긴급구조, 상황관리, 기관간의 협조·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- 8. "복구"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·시행,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,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9.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- 10. "재난관리주관기관"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- 11. "재난수습 주무부서"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12. "안전문화활동"이란 안전교육, 안전훈련,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13. "안전취약계층"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-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라. 13세 미만의 어린이
- 마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시의 책무)

-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, 조언,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,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조(시민의 권리)

-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조(시민 의무)

-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,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,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·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가구의 전도방지
- 2. 화재 방지
- 3. 음식료 및 식량 확보
- 4. 피난경로,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
- 5. 침수,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
-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,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민은 시와 자치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0. 8.>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[제목개정 2022.12.30]

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

제6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)

-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안전관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3.10.4, 2024.7.15>
- 1.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- 2.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3.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
- 6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7.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.<신설 2023.10.4>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7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,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맡는다.<개정 2023.10.4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23.10.4>
- 1. 서울특별시교육감
- 2. 수도방위사령관
- 3. 서울특별시경찰청장
- 4.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
- 5.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・본부・국장
- 6.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(사)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- 7.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・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- 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)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의 의2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1. 삭제 < 2023.7.24 >
 - 2. 삭제 < 2023.7.24 >
 - 3. 삭제 < 2023.7.24 >

제9조(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)

-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개정 2023.7.24>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,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.<신설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2023.10.4>

제10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

-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
-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1조(재난방송협의회)

- ① 재난에 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(이하 "방송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4.7.15>
-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재난에 관한 예보・경보・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
- 2.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및「방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- 3.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
- 5.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.<신설 2024.7.15>
-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15. 7. 30., 2019. 5. 16., 2023.5.22, 2024.5.20, 2024.7.15>
- 1. 당연직은 시의 실·본부·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
- 2.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- 가. 「방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
- 나.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
- 다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
- 라.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3. 삭제 < 2024.7.15 >
- 4. 삭제 < 2024.7.15 >

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"안전관리위원회"는 "방송협의회"로 본다.<개정 2024.7.15>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

-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협력위원회"라한다)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개정 2019, 12, 31.>
- 1.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 조정
- 2.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- 3.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
- 4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
- 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안마련
- 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
-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된다.
- 1. 행정2부시장
- 2.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③ 시의 재난안전실장,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개정 2015. 7. 30., 2019. 5. 16., 2023.5.22, 2024.5.20>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대표
- 2.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
- 3.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・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
- 4.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, 이재민 지원 단체 등
-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맡는다.<개정 2021.9.30, 2023.10.4>
- 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1. 평상시: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,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.
- 2. 재난 발생시 : 재난대응,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, 기업,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.
- 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- ⑧ 임기, 위원장 직무,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"안전관리위원회"는 "협력위원회"로 본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2절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

제13조(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)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책본부를 둔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4조(대책본부의 구성・운영)

- ① 본부장은 시장이 맡으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3.10.4>
-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, 지원협력관, 통제관, 총괄지원관,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.<개정 2023.10.4, 2024.5.20>
- 1. 차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실·본부·국의 소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본부장을 보좌한다.
- 2.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으며, 본부장·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 등을 총괄한다.
- 3.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·본부·국장이 맡으며, 본부장·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.
- 4.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실장이 맡으며, 본부장·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.
- 5.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.
- 6.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·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,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,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3.10.4>
-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9. 3. 28., 2023.10.4>

- 1.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 조정
- 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
- 3.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
- 4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재정상 조치 요구
- 5.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
- 6.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의 발령
- 7.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
- 9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대책본부회의 등)

-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"실무회의"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"상황판 단회의"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성・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7조(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8조(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)

-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19조(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)

-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, 5, 14.]

제20조(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)

-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할 수 있으며, 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 및 업무 등은 시장이 정한다.
- ②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21조(자치구 대책본부의 지휘 등)

- ① 시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자치구 대책본 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.
- ②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(이하 "중앙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 및 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22조(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)

-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 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23조(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)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 난관리책임기관, 대한적십자사 ·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 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24조(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)

-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자치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시비50퍼센트, 자치구비 50퍼센트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5. 16.>
- ② 피해신고를 받은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,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)

-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・예비군・사회봉사명령자・공무원・경찰・소방공무원・민방위대원 및 공공노동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・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3. 28.>
- ②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, 재 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5. 5. 14.]
- 제27조(재난상황에 대한 조치)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 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- 제28조(재난상황 보고요령)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할 구역의 자치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2.31>
 - 1. 보고시기
 - 가.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: 실시간별로 수시보고
 - 나. 최종피해상황 :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,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
 - 다. 피해확정액 :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
 - 2. 보고방법 :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,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
 - 3. 보고서식 :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,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절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<개정 2015. 5. 14.>

제29조(재난안전상황실 설치)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상황관리,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(이하 "재난안전상황실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30조(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)

-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, 전파
- 2. 위기요인 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
- 3.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
- 4.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
- 5. 소방·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, 시, 자치구, 공사, 공단의 사건,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, 시장단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
- 6.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-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절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
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・구성)

-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 전관리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5. 7. 30., 2019. 5. 16., 2023.5.22, 2024.5.20>
-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9. 3. 28.>
- 1. 건축・토목・전기・가스・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(이하 "전문가"라 한다)
- 2.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
- 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의 다른 실·본부·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19. 3. 28.>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2조(자문단의 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- 1. 건축물・교량・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2.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3.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
- 4.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
- 5.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
- 6. 시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33조(자문단원의 임기)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<개정 2019. 3. 28., 2025.1.3>

- 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자문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[제목개정 2019. 3. 28.]

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

제34조(재난예방조치)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 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35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)

- ① 시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
- 2.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,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6조(재난 예보・경보의 발령 등)

-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를 발령하거나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예보·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·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.
-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·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, 수습본부장, 본부장,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2.31, 2023.10.4>
- 1.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
- 2. 기상상황, 홍수정보, 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
- 3.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
- 4.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37조(재난위험요인의 신고)

-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·자치구청 장·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·자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, 긴급 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38조 삭제 < 2023.10.4 >

제39조(재난통계)

- ① 시장은 국・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, 자치구·긴급구조기관·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0조(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41조(재난관리 정책의 연구 • 개발 활용)

-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·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 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2조(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・평가)

-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과정에 따른 사업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,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.
- ② 시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

-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정비하여야 한다. 이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3. 28.>
- 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, 대피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등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30>
- ③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2.30>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3조의2(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

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1. 3.>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1. 3.>

[본조신설 2018. 1. 4.]

[제목개정 2019. 1. 3.]

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

제44조(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)

- ① 시 투자·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.
- ③ 시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, 피해상황과 기관별·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5조(응급대응조치)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 령,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46조(긴급구조)

- ① 법 제50조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,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47조(복구활동 등)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3.27>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

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-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
-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0.4>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.<신설 2023.3.27>
- 1. 안전취약계층 지원
- 2.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
- 3.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
- 4. 재원 조달 방안
- 5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개정 2018. 1. 4., 2023.3.27>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3.27, 2025.3.27>
-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9.30, 2023.3.27>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0조(국제교류 및 협력사업)

- ① 시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·산업체,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·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21.9.30>
- ② 시장은 효과적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21.9.30>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1조(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)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2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)

-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·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·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3조(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・감독)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・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.

- 1.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
- 2.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
- 3.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

[본조신설 2023.10.4]

제54조(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)

-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
- ②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5조(자원봉사자)

- ① 시장은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.<개정 2023.10.4>
- 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있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6조(재정지원)

-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47조의 복구활동, 제5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5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0. 8.>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
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3.3.27, 2023.12.29>
- 1.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
- 2.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・가스・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
- 3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- 4.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
- 5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- 6.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.<신설 2017. 5. 18., 2018. 3. 22., 2020. 5. 19.>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8. 3. 22,, 2020. 5. 19.>
-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10.5>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[제목개정 2019. 3. 28.]

제58조(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6장 보칙 <신설 2015. 5. 14.>

제59조(재난상황 홍보 등)

- ① 본부장은 시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

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한다.<개정 2018. 1. 4.>
-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시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4.]

부칙 (권위적·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) <제 9570호, 2025.3.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